

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1항제16호 중 “제1항 및 제2항”을 “제1항부터 제3항까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법 제5조에 따른 해외제조업소 등록에 관한 업무

제16조 중 “제1항 및 제2항”을 “제1항부터 제3항까지”로 한다.

별표 2 제2호 개별기준의 근거 법조문 중 “법 제46조제1항제1호”를 “법 제46조제3항제1호”로 하고, “법 제46조제1항제2호”를 “법 제46조제3항제2호”로 하며, “법 제46조제1항제3호”를 “법 제46조제1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현행	개정안
제14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. 1. ~ 15. (생략) 16. 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「식품위생법」 제67조 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한다. ≤신설> 1. · 2. (생략)	제14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15. (현행과 같음) 16. -----제1항부터 제3항까지----- ② ----- ----- ----- -----. 1. 법 제5조에 따른 해외제조업소 등록에 관한 업무 2. · 3. (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)
제16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.	제16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----- ---제1항부터 제3항까지----- ----- -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수입식품정책과	
연 락 처	043-719-2162